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 6. .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고,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 나.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18조제6항 개정 및 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 다.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 능력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 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14 개정)
- 라.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개정)
-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

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  
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  
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별표 16의1의바 신설)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별도 실시 예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여행알선”을 “여행계약의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47호 서식의 갱신기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중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필기시험(한국사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사시험(관광통역안내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한국사시험)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시험에서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의 급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급수여야 한다.

별표 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5-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4조, 제46조의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및 별지 제39호의5-1서식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u>여행알선과</u>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 ⑧ (생략)</p> <p><u>&lt;신설&gt;</u></p>	<p>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 ----- <u>여행계약의 이행</u> ----- ----- ----- ----- ----- ----- ----- ----- ----- ----- ----- ----- ----- ----- ----- ----- -----</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⑨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47호 서식의 갱신기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u></p>
<p>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p>	<p>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p>

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  
-----필기시험(한국사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사시험(관광통역안내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한국사시험)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시험에서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의 급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급수여야 한다.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관광안내 업/국내 여행업	국내외여 행업	종합여행 업	국내외 여행업 의 기획 여행	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 (비고) 1.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배 점 비 율
가.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자원해설	40%
	관광법규(「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30%
	관광학개론	30%
	계	100%
나. 국내여행안내사	관광자원해설	30%
	관광법규	30%
	관광학개론	40%
	계	100%
다. 호텔경영사	관광법규	10%
	호텔회계론	30%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30%
	호텔마케팅론	30%
	계	100%
라. 호텔관리사	관광법규	30%
	관광학개론	30%
	호텔관리론	40%
	계	100%
마. 호텔서비스사	관광법규	30%
	호텔실무(현관·객실·식당 중심)	70%
	계	100%

2.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구 분		내 용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토픽(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지텔프(G-TELP, 레벨 2)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펠트(PELT, 메인)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으로서 PELT main(듣기, 읽기) 시험을 말한다.
일본어	일본어 능력시험(JPT)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일본어 검정시험(日檢, NIKKEN)	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관행회(日本國書刊行會)에서 공동 개발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일본어 능력시험(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시행하는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중국어	한어수평고시(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國家漢語水平考試委員會)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실용중국어 시험(BCT)	중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中國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이 중국 북경대학교에 위탁 개발한 실용중국어시험(Business Chinese Test)을 말한다.

	중국어실용 능력시험 (CPT)	중국어언연구소 출제 한국CPT관리위원회 주관 (주)시사중국어사에서 시행하는 생활실용커뮤니케이션 능력평가(Chinese Proficiency Test)를 말한다.
	대만중국어 능력시험 (TOCFL)	중화민국 교육부 산하 국가화어측험추동공작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중국어능력시험(Test of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불어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델프/달프 (DEL F/ DAL F)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에서 시행하는 프랑스어 능력검정시험(Diplôme d'Etudes en Langue Française)을 말한다.
독어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괴테어학 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	유럽 언어능력시험협회 ALTE(Association of Language Testers in Europe) 회원인 괴테-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에서 시행하는 독일어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스페인어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텔레 (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스페인어 능력 검정시험 (Diplom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을 말한다.
러시아어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토르플 (TORFL)	러시아 교육부 산하 시험기관 토르플 한국센터(계명대학교 러시아센터)에서 시행하는 러시아어 능력검정시험(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이탈리아어	칠스 (CILS)	이탈리아 시에나 외국인 대학(Università per Stranieri di Siena)에서 주관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zione di Italiano come Lingua Straniera)을 말한다.
	첼리 (CELI)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Università per Stranieri di Perugia)과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에서 공동 시행하는 이탈리아어 능력검정시험(Certificato di Conoscenza della Lingua Italiana)을 말한다.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이 외국어시험은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시시험임.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시험명		자격구분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호텔경영사	만점/ 최고급수
영어	TOEFL(C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	207점 이상	230점 이상	300점
	TOEFL(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990점
	TEPS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990점
	G-TELP (Level 2)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FLEX		776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PELT(main)		345점 이상	181점 이상	302점 이상	373점 이상	600점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	1000점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JLPT		N1 이상				N1
중국어	HSK		5급 이상	4급 이상	-	-	6급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BCT	(B)	181점 이상				300점
		(B)L&R	601점 이상				1000점
	CPT		750점 이상				1000점
TOCFL		5급(유리) 이상				6급(정통)	
불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F DALF		DELF B2 이상				DALF C2
독일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Goethe- Zertifikat		B1(ZD) 이상				C2
스페인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E		B2 이상				C2
러시아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TORFL		1단계 이상				4단계
이탈리아어	CILS		레벨 2-B2 (Livello Due-B2)				레벨 4-C2 (Livello Quattro-C2)

		이상				
	CELI	CELI 3 이상				CELI 5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구 분	면 제 대 상 및 면 제 과 목
1. 관광통역안내사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p> <p>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p> <p>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p> <p>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li> <li>2) 관광안내실무: 20%</li> <li>3) 관광자원안내실습: 50%</li> </ul> <p>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효기간(3년 이내로 한다)과 사용외국어를 정하여 고시하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관광안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을 면제(한시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2. 국내여행안내사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p> <p>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p>

	<p>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p>
3. 호텔경영사	<p>가.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p> <p>나.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p> <p>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p>
4. 호텔관리사	<p>「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p>
5. 호텔서비스사	<p>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p> <p>나. 관광숙박업소의接客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p>

(앞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TOUR GUIDE CERTIFICATE	
사진 2.5cm×3cm	자격증 번호 : LICENSE NO. 자격구분 : Q U A L. 성명 : N A M E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PRESIDENT OF KTO

86mm×54mm(PVC(비닐) 980.4g/㎡)

(뒤쪽)

성명 : N A M E 생년월일 : DATE OF BIRTH	◎ 주의사항 ◎ 1. 이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기타 관광진흥법령 상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이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이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우)26464

86mm×54mm(PVC(비닐) 980.4g/㎡)



(앞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TOUR GUIDE CERTIFICATE**


사진  
2.5cm×3cm

자격증번호 :  
LICENSE NO.

자격구분 :  
Q U A L.

성명 :  
N A M E

유효기간 :  
VALID UNTIL



한국관광공사 사장  
PRESIDENT OF KTO

년 월 일

인

86mm×54mm(PVC(비닐) 980.4g/㎡)

(뒤쪽)

성명 :  
N A M E

생년월일 :  
DATE OF BIRTH

**◎ 주의사항 ◎**

1. 이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기타 관광진흥법령 상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이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이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우)26464

86mm×54mm(PVC(비닐) 980.4g/㎡)

## 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

① 등 록 번 호		② 업 종	
③ 상 호(명 칭)			
④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⑤ 사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⑥ ( 현 ) 보증보험 등 가 입 기 간			

귀 업체의 보증보험등 가입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증보험등 기간 만료 전에 가입을 갱신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연 락 처	044-203-2840